

'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

審 查 報 告 書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1일

〈제13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總務局長 金榮俊)

가. 제안이유

- 정부시책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과소비 추방과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함에 있어 우리구에서도 슬선수범을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사용하므로, 국민의 소비절약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위화감 해소는 물론 근검절약 풍토정착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중형승용차(소나타 2.0수동5단)을 구매하여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 취득소요예산 : 11,000원(시비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13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1992년 8월 29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정부시책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과소비 추방과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함에있어 우리구에서도 솔선수범을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사용하므로, 국민의 소비절약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위화감 해소는 물론 근검절약 풍토 정착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중형승용차(쏘나타2.0 수동5단)을 구매하여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 취득소요예산 : 11,000천원(시비확보)

3.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

1. 신규취득내역

(단위: 천원)

구분 품목	구 정 수		승 인 요 청							
	실 수	부 족	부서별	기 준			수 량	단 가	금 액	취 득 사유
				정수	실수	부족				
쏘나타 2.0 수동5단	109	1	총무과	110	109	1	1	11,000	11,000 (시비 확보)	정부의과소비 추방시책 차원에서 중형차량으로 교체